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08
----------	-------

발의연월일 : 2026. 9. 4.

발 의 자 : 박용갑 · 어기구 · 정준호
김병주 · 서영교 · 서영석
조인철 · 허 영 · 노종면
윤준병 · 이용우 · 이해식
진성준 · 김영환 · 서삼석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간병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의료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환자와 그 가족에게 과도한 간병비 부담이 지워지게 되어 치료의 지속이 어려워지거나 가계 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일례로 한 연구에 따르면 사적 간병비 부담은 2022년 기준 약 1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에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간병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간병의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되, 주변 사람에게 간병을 받기 어려운 사람부터

간병의 의료급여를 단계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0조의2 및 제11조).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간병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장기요양등급(「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을 말한다)을 받은 사람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세대 구성원이 본인 뿐인 사람
3. 그 밖에 세대 구성원 등의 간병을 받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간병 취약계층에 관한 특례) 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간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이 큰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부담금(제10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급여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면제 범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제3항 후단 중 “본인부담금(제10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급여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조제2항 단서 및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 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 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①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u>8. 간병</u>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방법·절차·범위·한도 등 의 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 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 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다. <u><단서 신설></u>	② ----- ----- ----- ----- -----. <u>다만, 제1항제8호에 따른 요양 급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권 자로 한다.</u>
<u><신 설></u>	<u>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장기요양등급(「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 기요양등급을 말한다)을 받은 사람</u>
<u><신 설></u>	<u>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u>

<신 설>

③ (생 략)

<신 설>

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세대 구성원이 본인 뿐인 사람

3. 그 밖에 세대 구성원 등의 간병을 받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간병 취약계층에 관한 특례) 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간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큰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부담금(제10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급여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면제 범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11조(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제11조(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심사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이미 납부한 <u>본인부담금</u> (제10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급여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과다한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수급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 ----- ----- ----- -----. ----- <u>본인부담금</u> ----- ----- ----- ----- ----- ----- ----- ----- -----.
④ ~ ⑧ (생략)	④ ~ ⑧ (현행과 같음)